

#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1995년 8월 10일

사회산업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달서구청장

나. 제출일자 : 95. 7. 31

다. 회부일자 : 95. 7. 31

라. 상정 및 의결

○ 제39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상정 : 95. 8. 9

·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의결 : 95. 8. 9

## 2. 제안설명요지(설명자 : 사회과장 신청길)

가. 제안사유

○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과 영세민생활안정자금사업이 목적은 동일하나 용자조건·관리체계 등이 상이하여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바, 사업을 통합운영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자금규모의 확대로 용자 한도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거양하고자 함.

나. 관련근거

○ 대구시 진흥 13240-235(95. 6. 30)새마을소득지원사업 개선지침

다. 주요골자

○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과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의 통합운영

○ 기금의 조성은 종전의 2개의 사업기금과 예산범위내 확보자금 및 기타 독지가 등의 찬조금 수입 등으로 함. (안 제2조)

- 용자대상은 용자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가능한 가구와 생계곤란한 영세 저소득층으로 함. (안 제3조)
- 용자한도액은 소득자금 2천만원이하, 안정기금 1천만원이하 이율은 연5%,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조건(안 제5조)
- 대상자선정은 신청자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동기금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안 제7조)
- 용자금 및 상환금 대출·수납관리업무 지정금융기관에 위탁관리(안 제11조)
- 기금의 효율적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안 제13조)
- 시행과 관련한 경과조치(부칙 제1조, 제2조) 등

###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전문위원 : 허 면)

- 본조례안은 전문19조 부칙2조의 제정조례로 종전의 새마을특별지원사업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한 사업의 추진에 따른 중복과 혼선을 방지하며, 운영관리체계를 단순화하여 행정의 부담해소와 업무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으로, 자금의 통합으로 자금규모가 확대되고 용자대상의 단순화와 지역실정에 맞는 가구선정의 명정성이 강화되고, 용자한도액의 대폭 상향조정으로 실질적지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됨.
- 조례안의 자구에 있어서, 안 제2조 제1호 중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인용부분은 부칙 제2조에 의거 인용조례는 본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되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하겠으며, 안 제3조 제3항 말미에 “동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안 제6조 대부신청시 동장추천을 요하는 부분과 중복됨.
- 안 제4조 위원회설치는 위원회의 심사대상·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선정·위원의 임기등을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고 제3항에서 규칙으로 포괄위임하는 부분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보며, 안 제6조 연대보증인 입보에 있어 보증인에 대한 채무변제능력 요건미비로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예상 됨.
- 안 제9조제3항 연장 신청서류 징구대상을 제2항 재연장 경우도 포함하고 안 제12조제2항 “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상황”제출의 자구수정을 요하며, 안 제17조 하단 “원리금과 이자”부분에도 자구수정을 요함.

본조례의 시행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나 조례안 내용중 명료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답변 요지(답변자 : 사회과장 신청길)

질의요지	답변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 조례의 제4조 제2항에 위원장의 공무원 3인을 포함하여 일반인 최대 3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공무원 4인만 하더라도 의결 종족수가 되는데 일반인 3인을 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은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닌지? 또 일반인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인을 위원에 포함시키는 것은 객관성을 부여하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며, 대체로 구의원, 동정자문위원장, 새마을지도협의회장, 통우회장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 대부된 융자금중 회수율은 어느정도이고, 융자신청시 2명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 바, 영세저소득주민이 연대보증인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 대부된 융자금의 회수율은 현재까지 95%이상으로 담당직원들이 수시로 회수하고 있어 문제점은 크게 없으며, 연대보증인의 경우 재산세 1만원 이상인 자로 하고 있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며 지원도 좋으나 회수도 중요하기 때문에 채권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조건을 붙인 것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조례의 제3조 제2항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대상중 행상, 노점상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점상 단속 등의 행정조치와는 상반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와 제3항에 학자금 융자시 성적우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성적미달자도 장학열이 높으나 저소득계층으로 어려움이 많은 가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들의 구제방법은 없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융자대상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삽입하였으며, 실제 노점상 설비에 소요되는 경비는 60만원정도로 융자신청이 없으며, 신청이 있을 경우 보다 융자 규모가 큰 사업으로 유도하도록 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며, 학자금 융자부분은 다른기관, 단체 등의 융자금 융자시에도 제한규정을 두고 있어 본조례에 제한을 둔 것임.</li> </ul>

5. 토론 요지

- 기금 및 자금의 운영관리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지원효과 확대와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제정안은 필요한 것으로 보며, 2개 조항의 조문에 수정을 요함 (반대없음)

6. 수정안 요지

제안일자 및 제안자	수 정 이 유	수 정 주 요 골 자
95. 8. 9 권춘갑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인용부분은 부칙 제2조에 의거 본 조례시행과 동시 폐지되는 것임.</li> <li>○ 원리금에 원금과 이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리금과 이자라 함은 잘못된 것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조의제1호 <u>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소득금고” 및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을 새마을소득금고 및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으로 수정함.</u></li> <li>○ 제17조 하단의 <u>원리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를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수정함.</u></li> </ul>

- 조문 대비표 : 별첨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반대없음)

8. 첨부 :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1부.

##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용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소득 금고” 및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
2.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
3.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등 기타 수입

**제3조(용자대상)** ① 주민소득지원자금(이하 “소득자금”이라 한다)의 용자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2.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3.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② 생활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용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로 한다.

1. 형상·노절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2. 천적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중 일부
4. 직계가족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5.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③ 제2항제4호에 의한 학자금용을 용자하는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생으로 학교성적 인문계 고등학교 30퍼센트 이내, 실업계 고등학교는 50퍼센트 이내인자로 하고, 대학생은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으로서 학교성적이 80점 이상(평균 "B" 학점 이상)인 자로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용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용자를 하지 아니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용자대상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설치)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용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을 둔다.

③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용자한도 및 이율등) ① 가구당 용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은 2천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1천만원 이하로 하되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② 용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5퍼센트로 한다.

제6조(용자금 대부신청) ① 용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이하 "대부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부신청시에는 같은 동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제7조(대상자 선정통보)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자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대출토록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용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제8조(용자금의 상환) 용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후 년1회 균분상환한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구청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1조(대출 및 상환금회수) ①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감독) ① 구청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년1회(12.31) 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 상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제14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회수용자금.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자금으로 한다.

제15조(중복용자의 금지) 용자금을 대부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용자금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용자할 수 없다.

제16조(용자금의 반환) 구청장은 용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전이라도 용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자금을 용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용자를 받은 자가 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7조(용자금 반환통보) 제16조 각호에 의하여 상환기일전에 용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용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리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등) 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달서구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및 대구광역시달서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용자조례는 각각 폐지하고 그 소관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동조제1항에 규정한 폐지조례에 의거 용자된 용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한다.

